

## 2026년 서비스업동향통계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에서는 서비스업동향통계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12. 12.

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장

###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지역	채용구분	채용인원	계약방법	채용기간	비고
원주 횡성	통계조사원 (기간제근로자)	1명	근로계약	2026. 1. 5. ~ 2026. 9. 4.	

※ 위 내용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담당업무
통계조사 (경제부문 경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체 업종별 매출액 등 월별 생산실적 조사 및 산업분류 확인 등 내용검토, 표본 사업체 생멸 확인 등</li><li>- 소비자물가조사 등 경제통계팀 경상업무 수행</li><li>- 사업체 대체 및 착오 조사에 따른 상시 연간보정 업무 등 수행</li></ul>

### 3.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로시간 및 형태: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18시) 근무
- 보수
  - 일 급: 82,560원 / 1일
  - 기 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최종점수가 높은 자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및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

5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li> <li>-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li> <li>-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li> <li>-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li> <li>-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li> <li>-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li> <li>-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li> <li>-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li> <li>-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li> <li>-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li> <li>-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li> <li>-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li> <li>-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li> </ul>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li> <li>-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li> <li>-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li> <li>-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li> <li>-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li> <li>-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li> </ul>

## 5.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
- 「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 6. 전형일정

- 채용공고: 2025. 12. 12.(금) ~ 2025. 12. 19.(금) 18:00까지
- 서류전형: 2025. 12. 22.(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장소 발표: 2025. 12. 24.(수) 10:00 이후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일시 : 2025. 12. 29.(월) 10:30 (예정)
  - 면접장소 : 원주사무소 3층 회의실(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자세한 일정 및 장소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30.(화) 11:00 이후
  -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채용정보(합격·공지)란에 공고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7.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2. 12.(금) ~ 2025. 12. 19.(금) 18:00까지

○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	경제통계팀 박선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나라키움 원주청사 3층	전화 : 033-769-3731 팩스 : 033-732-0632	sypark330@korea.kr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내에 접수 가능

- 접수 후 원서 접수 여부를 꼭 본인이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이중취업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해당자만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 평가에 도움이 될 자격증(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달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붙임5)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정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문의사항: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 채용담당자(033-769-3731)

【붙임1】 (필수제출)

## 국가데이터처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업무명	경제부문 경상조사	분 야	기간제근로자	응시번호	미기재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 -			
	주 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e-mail				
일 반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통계청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자 격 사 항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전산 관련				
	기타				
기 타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자녀보육 가구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주 1」 분야에는 [조사원, 입력요원, 자료처리요원, 사무보조원 등] 기재  
2」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응시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붙 임 :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등 증명서류)

【붙임2】 (필수제출)

## 자 기 소 개 서

조사명	경제부문 경상조사	분 야	기간제근로자
성 명			
<p>(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p> <p>300자 내외로 작성(15point, 굴림체)</p> <p>(자기소개) 지원동기, 본인의 장단점, 목표 등을 자유롭게 기술</p>			
<p>(직무수행 역량) 업무경험(경력) 및 직무관련 활동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p>			

【붙임3】

**(채용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계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이중취업여부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해당자	자격·경력·학위, 취업지원 대상(저소득, 다자녀, 북한 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비자 종류(외국인)	채용요건(자격·경력·학위 등), 채용우대 확인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장애 종류 및 등급	근로자 채용 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해당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장애인증명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국가자격증	
근로자 채용 및 관리	한부모가족증명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2. 이용기관의 명칭 :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

###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